

라티노 이민자 불법성과 시민권 투쟁

이 은 아
서울대학교

이은아(2019), 「라티노 이민자 불법성과 시민권 투쟁」, 이베로아메리카연구, 30(3), 259-285.

초 록 이 글의 목적은 라티노 불법성 논쟁과 시민권 투쟁의 연관 관계를 고찰하는 데 있다. 특히 멕시코계 이민 노동자를 표적으로 한 불법성 담론은 1960년대 브라세로 프로그램, 1990년대 국경지역의 군사화, 그리고 트럼프 정부를 거치면서 점차 확산되어 온 과정을 보여준다. 불법성 담론의 확대·재생산과 맞물려 확산된 주류사회의 반이민정서와 더불어 라틴아메리카 출신 이민자 인구의 증가로 인해 촉발된 시민권 개념은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라티노 미등록이민자에게 입혀진 불법성 개념의 자의적이고 모순된 양상, 그리고 여기에 맞서 새롭게 제기된 시민권 개념을 이해하고자 2006년 대규모 반이민법 저항 시위가 전례 없이 보여준 정치학, 윤리적, 철학적 차원의 함의를 두루 검토해 본다. 라티노 대규모 시위 이후 우경화되는 사회 변화를 통해 라티노 정치학계가 제기한 새로운 투쟁 방식과 시민권 개념을 일별하는 작업은 우리 사회의 이민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을 해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핵심어 라티노, 시민권, 불법성, 미등록이민자, 반이민정서

I. 들어가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부터 불거진 불법이민자 문제가 최근까지도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멕시코와 관세 협상을 하는 데 불법 월경을 시도하는 중미출신 사람들의 제재를 요구하며 심지어 난민 문제까지 거래의 잣대로 삼으려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전해진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불법이민자 송환 관련 쟁점과 더불어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임시 체류 중인 중미 카라반 행렬도 미디어의 관심을 받았다.

미국 사회 내에서 라티노 인구의 중요성을 차치하더라도 이민 문제가 우리 사회에 야기하는 갈등을 감안한다면, 불법이민과 시민권의 문제, 좌우로 양극화되는 정치적 지형에서 이민자들이 제기하는 민주주의 원리와 인권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미국의 신제국주의적·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질서가 촉발시킨 이주의 결과로 급증한 라틴아메리카 출신 이민자들은 서서히 사회적 시민권 투쟁의 양상을 지니고 움직이고 있다. 미국 주류사회가 확대재생산하는 불법성(illegality)이라는 개념에 비판적으로 대응하는 그들의 다양한 도전은, 이제 생존의 문제를 들고 ‘자유로운 드나들’을 열망하는 이민자 앞에 한국 사회가 내놓아야 할 대답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이다.

우선 보수/우경화되는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불법성이라는 담론과 이미지가 의도적으로 집중/확산된 측면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역설 혹은 위기 앞에서 일상적인 ‘시민불복종’이 필요한 것처럼 라티노 정치사회운동에서 개별적 목소리의 표출이 ‘무국적자 인권’에 대한 요구이자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략에 대한 하나의 단상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권과 불법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라티노 정치학자들의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거를 통해 현실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재고하게 된 계기가 보다 가깝게는 2016년 대선과 다소 멀리 되돌아보자면 2006년 반이민법 반대를 외친 대규모 시위가 될 것이다. 당시 라티노 학

자들은 2006년 반이민법 저항 시위에 대해 기대어린 전망을 했지만, 현실에서는 이민 문제가 진일보하기보다는 이를 빌미로 크게 위축되는 반대 양상을 보였다. 미국 주류 사회의 반격에 의해 제도적 개혁에서도, 미디어 장악력에서도 오히려 후퇴한 측면이 강하다. 저항 시위가 미국 주류 사회의 변화와 전혀 연결되지 못했다는 점, 오히려 라티노 정치학의 위기와 라티노 사회의 분열로 연결되었다는 점은 새로운 방식의 분석과 전망, 정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그 시위가 제시했던 가능성과 현실적 한계, 2006년 이후 전개되었던 양상을 돌아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라티노 정치학자들이 주창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방식이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본다.

이 글을 통해 불법성이 어떻게 증폭되어 왔는지 라티노 이민사와 이민법에 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사안을 중심으로 내적 모순과 정치사회적 효과를 점검해 보고, 법적 지위를 막론하고 라티노 이민자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저항과 도전, 생존과 전환으로서 등장하는 다양한 시민권의 개념에 대해 고찰해 본다.

1. 이민자 불법성 담론의 흐름

불법성이 단순히 법률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정치적 산물이자 투쟁의 지점이라는 점은 라티노 이민사를 통해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Heyman 111). 불법성은 불법이민자의 증가와 더불어 주류 사회의 반격에 의해 그 수위가 조정되어 왔지만, 가장 큰 쟁점은 불법이민자를 사회에서 배제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이들 이민 노동자들을 착취 가능한 시스템에 영속적으로 묶어놓는 데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불법성이 필요악으로 존재할 때 라틴아메리카 출신 이민 노동자는 노동 즉, 경제적 가치로만 환산되는 존재로 인식 가능해진다. 최근 트럼프 이민 법안이 보여주듯이, 미국 사회에 동화하고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착한 라티노’만이 미국 사회 내 합법적 이민자, 시민권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논리가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는 그들이 효용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에 던져지는 ‘잠재적 상품’이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따라

서 인권, 공존, 혹은 안보 등은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미국은 1920년대부터 국경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행했지만 1990년 이전에는 미국 남서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멕시코인들의 이주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경계를 하지 않았다. 이들이 대부분 분리된 노동시장과 농장노동에 한정해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비교적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90년대를 기점으로 계절별 순환 이민이 감소하고 미국 전역으로 멕시코 공동체가 확산되기 시작했다(Dreby 183). 멕시코계 미국인을 외부인으로 치부하는 시선, 그들에게 덧입혀진 불법적 이미지는 나프타 이후 비합법적으로 월경한 멕시코인들의 급증 탓이 크겠지만 (미등록이민자의 70% 이상이 멕시코를 포함한 중미출신이다), 역사 이래 미국에게 유일하게 대규모 해외 이주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멕시코 출신 이민자에게 그런 이미지가 주어진 것은 필연적이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9세기 영토 확장을 통해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위계적 질서가 구축된 이래, 이민노동자를 제공하는 멕시코가 불법성의 표적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또한 미국 내부의 정치경제적 부침에 의해 외부인에 대한 불만이 고조될 때마다 축출과 송환의 과정을 통해 그들의 불법성을 지속적으로 환기하는 것도 당연한 수순으로 되었다.

니콜라스 데 제노바(Nicolas De Genova)가 정확히 지적하고 있듯이, 이민자 불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계심은 이민제도를 보다 억압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사회적 저항을 줄이는 역할을 해왔고, 이런 점을 교묘히 활용하는 이민제도는 미국 고용주가 유연하고 착취 가능한 이민자 노동 집단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왔다(58). 아무리 정치적으로 그들을 부인하고 밀입국을 제지하더라도 누군가는 그것을 어렵사리 회피해 노동 현장에 가 있게 될 것이다. 사회는 그것을 전부 차단할 수도, 나아가 전면적으로 제지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불법성 담론에 내재한 모순일 것이다.

이처럼 멕시코계 이민 노동자를 특히 표적으로 삼은 불법성 담론은 1960년대 브라세로 프로그램, 1990년대 국경지역의 군사화, 그리고 트럼프 정부를 거

치면서 점차 확산되어 온 과정을 보여준다. 불법성에 내재된 모순이 처음 공론의 장에 드러나게 된 계기는 브라세로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지금의 이민 논쟁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폐지된 과거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초청’이라는 명칭만 변경된 채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브라세로 프로그램은 양국이 경제적, 사회적 필요에 의해 맺은 노동계약협정이었기에 계약노동자는 단기 체류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멕시코계 이민자들에게 ‘불법적 외부인’이라는 이미지를 가중하는 부정적 효과를 의도치 않게 낳았다. 미국 측 사용자들이 수익성이라는 이유를 들어 계약노동자보다는 불법이민자를 점점 선호하게 되면서 오히려 불법성을 용인 혹은 장려하는 부작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멕시코 출신 노동자들이 브라세로든, 불법이민자든 농장주에게는 그들의 법적 지위가 상관 없었다. 노동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적은 임금을 제공하고 안정적 노동력을 얻을 수 있다면 개의치 않고 불법노동자를 고용했기 때문에 양국 간의 협정이 철저히 이행되지 않았다. 또한 브라세로 계약노동자가 불법노동자로 신분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노동자 주체의 주저함이나 경계심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법성을 방기한 측면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 또한 이 프로그램이 지닌 취약성이 될 것이다.

매 응가이(Mac M. Ngai)는 『불가능한 주체들 *Impossible Subjects*』에서 미국 시민에게 이민 노동자와 시민권 개념을 공공연히 분리시킨 브라세로 프로그램 속에 식민주의가 내재되어 있음을 설명한다. 수입된 노동력인 탓에 불필요할 시 처분 가능한 상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더욱 고착된다. 교화시키고 편입시켜야 하는 식민지의 노동자들과는 달리 이들은 공동체 내에서 노동권에 대한 어떤 사회적 책무감도 일으키지 않는 관계 밖의 사람들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노동력으로 인식되었다(133). 앞에서 언급했듯이 미등록 이민노동자를 감소시키겠다는 목적 하에 기획된 프로그램이 이런 불법성을 오히려 조장하는 데 일조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응가이는 이 프로그램의 성격을 ‘수입된 제국주의’로, 계약노동자들을 ‘현대판 노예’라는 용어로 정의 내린다.

양 국가 간에 맺은 계약 조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켜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은 합법적으로 월경한다는 자유 외에 임금이나 노동권 관련 협상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과잉노동과 저임금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Ngai 132-133). 이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제도의 미비함과 사용자측의 수익 위주의 편법적 운용, 비인권적 사고방식으로 말미암아 합법적 계약 노동자들이 불법노동자로 자발적으로 전환하는 예기치 못한 결과가 계속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사용자 측의 요구와 미등록이민자 감소라는 이유를 들어 연방차원에서 이들을 합법화시키는 절차가 진행되기도 했다. 물론 이는 1950년대 윗백 작전(Operation Wetback)이라는 대규모 검거 송환과 동시에 이뤄진 것이다.

이 제도는 미국의 자유와 평등을 기치로 내세우는 민주주의 정신에 기본적으로 위배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도입되었다. “미국은 해외계약노동을 1885년에 법적으로 금지시켰다. 내전 시기부터 미국인들은 계약노동은 노예제도처럼 민주주의가 기대고 있는 자유노동의 안티테제라고 믿어왔다”(Ngai 137). 그럼에도 전쟁(세계대전)이 만든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변명을 공식화하며 과거 유럽 제국주의 방식의 착취 노동제를 재현한 것이다. 멕시코계 이민자들이 미국 남서부의 현대 정치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음에도, 이들이 이주 농업 프롤레타리아, 인종화된 탈국가적 노동력, 착취와 송환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브라세로 프로그램이 재확인시켜 주었다(De Genova 42).

응가이가 “브라세로들(Braceros)” 장에서 소개한 한 노동자의 시민권 판례에 관한 일화는 시민권 정의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는 불법성의 근거가 당시 편의적이었고, 멕시코 이민자는 이미 시민권 논의에서 제외되어 있었음을 알게 해 준다. 응가이는 1958년 텍사스 엘패소 출생의 클레멘테 마르티네스 페레스(Clemente Martínez Pérez)의 시민권을 정부가 폐지한 건을 다룬 대법원 소송 판결에 대해서 언급한다. 정부는 페레스가 멕시코 선거에서 투표를 했을 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동안 군복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그의 시민권을 취소했다. 이 때 수석재판관은 이 재판 결정에 불만을 표시하며 “시민권은 인간의 기본권이고, 그저 권리를 가질 권리일 뿐이다”라는 의견 표명을

했지만 대법원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1967년이 되어서야 이런 의견이 이민 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Ngai 127).

응가이가 언급한 페레스 사례는 미국 시민권 관련 법적 분쟁사의 일부이자, 멕시코와 미국 간 정치적 주제의 새로운 시각, 즉, 시민과 비시민을 가르는 경계의 혼란을 보여준다. 브라세로 프로그램에 시민과 비시민을 정의하는 정치 판단뿐 아니라 혼종적이고 탈국가적인 성격의 복잡한 개인사와 국가 간 역사가 모두 혼재해 있는 것이다. 페레스는 브라세로 노동자였지만, 그의 출생, 노동, 출입국 과정은 매우 예외적이다. 미국 출생으로 청소년기에 멕시코로 건너가 거주하며 브라세로 노동자로 두 번 미국에 오게 된다. 이후 미국 시민으로 미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INS는 페레스가 미국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그의 요청을 거부한다. 그는 몇 년 뒤 재입국을 하며 이번에는 자신이 멕시코 국적임을 주장하며 브라세로 노동자로 인정받기를 원했는데, 일 년 뒤 INS는 ‘원치 않는 외부인’이라는 근거로 그에게 송환명령을 내린다. 그는 자신이 미국 태생의 미국시민이라는 점을 주장했지만 연방법원은 그가 시민이 아니라고 결정을 내렸다. 그는 배신한 미국시민이자 동시에 원치 않는 외부인이 된 셈이다(Ngai 128). 이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불법성을 기준으로 판단한 시민권은 매우 유동적이었고 특히 역사적으로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나들며 생존을 해온 멕시코인들의 경우, 미국시민, 브라세로 노동자, 불법적 외부인, 송환된 이민자라는 정체성을 중첩되게 얻을 확률이 높았다. 따라서 이들의 시민권 또한 법률상 매우 모호하고 혼종적인 특징을 띠는 가능성이 컸다.

불법성에 관한 논의가 변화를 맞게 된 다음 시기는 이 문제가 국경지대에 집중되기 시작한 90년대 이후이다. 조시아 헤이맨(Josiah Heyman)에 의하면 1990년대에 이르면 국경이 이민자 불법성을 만드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미국-멕시코 국경의 군사화는 양국 간 지정학적 갈등이 없음에도 이뤄진 경우라서 매우 이례적이다(Heyman 114). 국경 단속은 유사한 패턴을 지니고 확대되어왔지만, 국경을 군사화시키면서 불법성이 보다 가시화, 공론화되는 효과를 만들게 되었다. 즉, 1993년부터 강화된 단속으로 인해 이민 노동력을

조정하는 문제가 사막이나 산지 등에서 이민자를 검거하는 문제로 변경된다(Heyman 116). 군부대 배치뿐 아니라 군사 기술이 시민법 단속을 하는 기관에 이전됨으로써 불법이민자 체포, 구금 등의 집행이 보다 폭력적이고 불법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1990년대 이후 국경 단속 강화로 인해 국경선을 불법적으로 지나는 행위가 더 위험하고 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일이 되었다. 마약과 이민자를 겨냥한 장벽은 마피아적 밀수 경제를 창출했고 복잡한 범죄 조직이 멕시코와 중미의 이주 비즈니스에 개입되었다는 사실이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Brown 124-25). 실제 국경을 넘는 행위가 점점 어려워질수록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성공하려는 사람들의 절박함으로 인해 지하 경제가 더욱 발달하게 되고, 미등록 이민자를 착취하는 구조를 통해 유지되는 사업이 날로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불법월경의 문제는 물리적 경계를 넘는다는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과 연관된 다양한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문제가 연쇄적이고 영속적이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크다. 또한 이들이 사회에서 불법적으로 노동을 하는 동안 심리적 불안을 겪을 뿐만 아니라, ‘과도착취(superexploitation)’라 불리는 현상, 즉 국경을 건너면서 지게 되는 이주 채무로 인해 일터에서 장시간 위험한 노동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Heyman 121).

이민 문제가 국경 단속에 집중된 이유는 사회적 두려움과 혐오가 미등록 이민자의 경제적 유용성이라는 담론을 능가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미등록 이민자의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를 정치화하며 동시에 일자리 수요에 맞게 노동 흐름을 허락해 ‘악용가능성 효과(exploitability effects)’를 최대한 누리도록 조정해온 그동안의 이민제도 운용방식이 더이상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헤이맨은 이런 지적이 불법 노동자를 수용하는 사업주/농장주의 규모와 지역의 다변화, 일자리 수의 축소 등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한다(Heyman 117). 이전까지 미등록이민노동자 단속은 노동 수요를 원했던 이들에 의해 그 수위가 조정되었는데, 90년대 이르자 큰 저항에 부딪히지 않고 법집행이 가능해 지게 된 것이다. 미등록이민자 차단에 대한 여론이 경제적 논리

에서 다소 멀어지면서 정부는 공권력을 국경지대에 배치함으로써 정치적 효과를 누리게 되었다.

불법성 담론과 관련된 세 번째 시기라면 2001년 9/11 테러 이후로 볼 수 있는데, 테러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불법성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재차 환기되는 일련의 정책적 결정과 미디어의 활동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2003년 국토안보부가 신설되고 모든 이민 통제가 반테러리즘이라는 기치 하에 이뤄지기 시작한다. 더구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경 장벽이 쟁점이 되는데, 이미 10여 년 전에 출판된 웬디 브라운(Wendy Brown)의 『장벽화된 국가, 기우는 주권 *Walled States, Waning Sovereignty*』은 현재 벌어지는 이 쟁점을 분석하는 데 매우 심도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브라운은 이 책에서 ‘장벽세우기(walling)’를 통해 한 국가가 방어적이 되는 목적과 결과를 광범위하게 고찰한다. 브라운은 미국에서 테러가 생겨난 원인과 과정을 언급하며 정부가 테러리스트를 막는다는 이유를 들어 국경 장벽을 강화하지만, 그를 통해 얻는 효과가 문제의 해결책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서로 상충하지 않는 원인과 처방의 아이러니에 대해 비판한다. 국경 경비를 강화하기 시작한 1994년 이후 국경을 막는 장벽은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고 각종 감시 기술 및 차량, 센서 등이 도입되면서 ‘가상의 벽(virtual wall)’의 기능을 하도록 만들었다(Heyman 112). 브라운은 불법성을 상징화하는 장벽이 언어적 수사학을 넘어 실제 가시적으로 이민자를 ‘침입자’로 만든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시대가 부추기는 근본적 불안감을 진단한다. 장벽세우기를 통해 이민자 혐오증을 표출하는 원인과 현상에 대해 정치적, 도덕적, 심리적, 나아가 실존적이지자 종교적인 층위에서 두루 분석하면서, 외부인의 수용과 관용이 어려워지는 현실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한다. 브라운은 무엇보다도 장벽을 세운다는 것은 국가의 주권이 약화되었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역설한다. 장벽은 모든 잘못을 외부 타자로 돌릴 수 있는 막이자 마치 국가라는 큰 집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 인식되게 만드는 효과를 준다는 것이다. 아무리 이민 단속이 강화되고 반이민정서가 증폭된다고 하더라도 이민자들이 출신국(송출국)에서 최저생활유지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지 못

하는 한 미국으로의 이동은 불가피하다. 반대로 미국에서 백인 계층이 누려온 입지와 한 국가로서 누려왔던 세계적 헤게모니에 대한 집착이 심해질수록 지배층은 더욱 더 호전적이고 광적으로 불법적 외국인을 정치적으로 부인하게 될 것이다. 브라운은 이에 대해 이상화된 과거에 맞춘 미래의 환상을 장벽을 통해 만들고 있다고 평가한다(Brown 145).

세 시기를 걸쳐 살펴 본 불법성 개념에서 확인하듯이 그 정의는 여전히 모호하다. 시의에 따라 법적 처벌뿐 아니라 사회적 공론에 의해서도 합법적 시민과 불법적 외부인, 제도적 규율과 징벌 사이의 경계가 강화되거나 약화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민자의 불법성은 의도적인 법적 개입의 효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닌, 학계 연구를 포함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 및 정치적 투쟁을 아우르는 담론 형성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로 만들어지고 있다(De Genova 43). 데 제노바는 불법성을 제어하는 방식을 ‘외설적’이라고 표현한다. 국경지대는 불법성의 스펙터클이 벌어지는 무대가 되었다. 국경지대에서 벌어지는 이민자 배제와 포용이 전부 보임과 감춤을 권력적으로 행사하는 방식과 연관되어 있다. 그가 ‘권력의 외설성’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점을 보더라도 이제 국경지대를 배경으로 한 불법성 담론은 시각적 지배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이렇듯 장벽세우기를 통해 불법성의 이미지가 한층 더 시각화되는 현 시기에 ‘침입자 외부인’이라는 메시지가 정치적으로 재현되는 방식에 더욱 비판적 관점을 취해야 할 것이다.

2. 시민권 개념의 인식적 전환

시민권의 개념, 즉 국가의 경계와 결속된 특정한 지위이자 권한을 논의하는 자리에는 ‘원치 않는 외부인’, ‘불법적 외국인’을 구분하는 일이 선행된다. 그래서 ‘이민자 라티노’ 대 ‘자국민 미국인’이라는 대립구도를 통해 라티노를 타자

1) 니콜라스 데 제노바의 “이주자 불법성의 스펙터클: 배제의 장면, 포함의 외설(Spectacles of migrant ‘illegality’: the scene of exclusion, the obscene of inclusion)”(2013) 논문을 참조할 것.

화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동등한 시민권을 부인하려는 인종차별주의가 깊게 고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티노 중 많은 수가 부당하리만큼 불법적 외국인이라는 이미지를 지니면서 법률적 정의와 상관없이 정치적 주체로 인종화된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 이민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정치적 성향과는 별개로 이민자의 필요성을 두고 서로 일치하지 않는 의견을 내세워 왔기 때문이다. 이민자 노동 수요와 업종별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민자의 지역별 밀집도와 라티노 인구수에 따라서, 놀랄 만큼 상반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미등록이민자에 대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이민자를 더 이상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과 불법성에 대한 단호한 조치와 함께 시민권 획득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거의 비등한 정도로 나타난다. 현재 미디어를 통해 전해지는 반이민법 목소리는 극단적인 티파티 운동에서 출발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수사학을 거치면서 고조됨으로써 제조업자들의 분노를 한층 더 자극하게 되었고, 그 결과 지난 대선 때 공화당의 득표로 이어지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에 맞선 매케인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가 티파티 운동의 주자였던 사라 페일린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면서 그녀의 정치적 존재감을 키워준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을 반길 수 있는 여론을 사전에 준비한 과정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²⁾

그러나 이민법 개정을 통해 미등록이민자를 합법화시키는 문제로 이주 불법성을 해결하고자 했던 오바마 정부의 법안도 세계화의 흐름 내에서 인적 자원의 이동만 제어하겠다는 역행적 의도를 드러낸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05년에 발의한 반이민법안과 맥락을 함께 하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 법안은 합법화에 대한 반대, 즉 시민으로 인정받는 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법망 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유효한 가능성을 차단해 불법성을 사전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반이민정서와 맞물린 이런 갈등으로

2) 존 매케인의 공화당 대선 후보 관련 신문 기사 참조. 초당파적 이민 법안을 지지했음에도 페일린을 지목한 그의 실수와 이후 정치적 여파에 관해 분석하고 있다.

인해 시민과 비시민을 가르는 시민권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회 곳곳에서 제시되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민권은 마샬³⁾의 전통적 정의에 의한 자유권, 참정권, 복지 권리 등을 포함한 내용일 것이다. 이런 일반적 범주를 뛰어넘어 시민권에 대한 법률적/학문적 논의를 두루 아우르기 위해 린다 보스니아크(Linda Bosniak)은 『시민과 외부인 *The Citizen and the Alien*』에서 시민권 개념의 딜레마에 대해 논의한다. 시민권은 일반적으로 민주적이고 평등한 열망의 실현으로 인식되지만, 이 개념에 내재한 윤리적 모호성을 감추는 낭만주의적 용어 탓에 실체가 가려진다. 시민권의 아이디어가 소속이나 포함을 환기시키지만, 이 포함은 이미 배타적인 공동체의 개념을 근거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Bosniak 1). 보스니아크는 현재에도 시민권을 여전히 국민국가의 경계 내에 갇힌 것으로 이해한다면 지금의 현상과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현 시민권의 헌법적 정의에 맞서며 국민국가와 포스트국가의 개념을 대비시키면서 ‘보편적 시민권’, ‘외부인 시민권’으로 논의를 확장해 가는데, 그의 논의는 미등록이민자들의 주장을 이해하는 데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요구됨을 깨닫게 해 준다.

시민권을 이해하는 4가지 방식을, 법적지위, 권리, 정치적 행동, 집단적 정체성 혹은 감정의 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Chavez 12). 레오 차베스(Leo Chavez)는 『라티노 위협 *The Latino Threat*』에서 보스니아크의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미등록이민자 시민권과 관련된 논의를 전개한다. 라티노 이민자 시민권에 초점을 두고 이해하기 위해 차베스의 요약을 중심으로 4가지로 세분화된 개념을 간략히 점검해 본다. 우선 시민권을 법적 지위로 한정해 본다면 범죄 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미등록이민자들을 잠재적 혹은 확증적 범죄자로 낙인을 찍을 가능성이 농후해 진다. 법적 지위 부여와 관련해 시민과 외부인인가를 가르는 기준에 대해 법률적/사회적 동의가 필요한데, 앞 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범죄성이 이

3) 영국의 사회학자 토마스 험프리 마샬이 주장한 시민권의 개념은 공민권(자유권), 정치권(참정권), 사회권(복지 권리)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대적으로 발전해 온 이 세 가지 권리가 상호보완적으로 존재해야만 완전한 시민권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들을 외부인으로 간주하는 배제의 논리에 크게 일조하기 때문이다. 사소하거나 비의도적 법률 저촉 행위에 가혹한 수준으로 법적 개입이 이뤄질 경우,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 지고 이에 따라 시민권에 접근할 가능성은 희박해 지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성에 대한 혐오와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은 미등록이민자들을 시민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등록이민자들을 마약중독자 혹은 성범죄자로 묘사하는 정치 수사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시민권을 권리로 인식한다면, 마살이 역사적 발전을 따라 분석한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등을 모두 포함한 시민권의 개념과 일치한다. 그런데 이런 인식은 미등록이민자 또한 한 인간으로 양도할 수 없는 천부권을 지녔다는 생각과 사회의 일원이 아니기에 그들의 혜택과 권리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나누게 된다(Chavez 13). 미국의 이민법은 유입되는 이민자의 자격요건을 조정하는 데서 이미 거주하는 이민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제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1996년 이민법은 미등록이민자들에게서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을 빼앗았고, 이후 미국출생인 자녀들에게도 무상교육, 의료보험, 공공주택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식의 조정을 거친다면 인권의 개념을 포함했던 기존의 시민권의 개념 또한 점차 협소해 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시민권을 정치적 행위에 참여하는 자유이자 의무로 본다면, 국가적 경계를 넘어선 정치적 행위와 조직에 참여하는 사람이 앞으로 지니게 될 시민권이 어떤 형태를 띠게 되는지 혼란스러워 질 것이다. 국민-국가-주권의 고리가 단단하고 자연스럽게 묶이지 않는 이상 시민권의 개념 또한 영토적 개념에서 벗어나게 마련이다. ‘세계적 시민권’, ‘탈국가적 시민권’이라는 형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그만큼 국가와 시민권의 자동적 연결 방식이 헐거워졌다는 반증이다. 이런 새로운 개념의 시민권이 부상하게 되면 미등록이민자를 포함한 이민자들이 그들의 공동체에서 정치적 시민권을 발휘할 수 있는 각종 시위, 운동, 조직 활동 등에 가담할 수 있는 길이 생겨난다(Chavez 14).

마지막으로 시민권을 정체성이나 공동체 연대를 기반으로 이해한다면, 한 공동체의 소속감 혹은 유대감은 생래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공간과 권리를 요구하는 광범위한 행위로 인해 쟁취한 결과물로 간주해야 한다(Chavez 14). 수잔 쿠티(Susan Coutin)이 『이주를 합법화하며 *Legalizing Moves*』에서 지적한 것처럼, 미등록이민자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속감을 누리듯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문화적 시민권은 공유 경험이나 주체화의 과정을 통해 획득된다. 2006년 미국에서 대규모로 진행되었던 반이민법 저항 시위는 소속감을 기반으로 사회에 완전한 편입을 열망하는 정치적 행위였기에 문화적 시민권에 대한 요구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문화적 시민권은 개인의 주체성을 형성하는 과정과 관계된 것으로 ‘시민되기’의 주체적 수행과 정부 혹은 사회의 ‘시민만들기’라는 통치 방식이 결부된 것으로 봐야 한다(Chavez 15).⁴⁾ 따라서 문화적 시민권이라는 개념 또한 국가나 정부의 통치에서 비롯된 규율이나 규범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당신이 원하는 곳에서 살고, 사랑하며 일하기 위해(To live, love and work anywhere you please)”라는 글은 최근 미등록이민자들이 저항 시위에서 요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한다. 이 글에 의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정하는 것과 달리 이들의 주된 희망사항은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Fernandez & Olson 415). 저자들의 요약에 따르면, 미등록이민자는 “시민권 전에 이동성을 요구한다”, “복수의 정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어 개별 조직에 참여할 권리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들의 이동하는 속성은 자유국가의 핵심적 원리, 즉, 주권, 영토, 시민권에 도전한다”(Fernandez & Olson 412-13)

이민법 개혁이 주로 합법적 지위를 제시하는 방안들에 머무는 반면, 이들은 보다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며 장애나 제한 없이 국가를 넘나드는 이동의 자유와 신체의 움직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요구에 합법적 시민이 즉각적 거부감을 드러내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유로운 시민권’이라는 개념이 자유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이다(Fernandez & Olson

4) 바바라 크룩생크 저서 『시민을 발명해야 한다』에서 푸코 관련 부분을 참조할 것.

146). 세계화된 시대의 삶에서 복수의 공간을 이동하는 생활이 필연적으로 복잡한 형태의 소속감을 만들게 되고, 자유로운 시민권이라는 개념 내부에 특정 장소에의 귀속과 움직임 사이에 긴장을 야기한다. 미등록이민자들이 2006년 시위에 참여해 요구한 시민의 권리는 바로 그들의 글로벌 이동성과 로컬 정치 참여라는 두 가지 제한을 자유롭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자유로운 시민권이라는 개념을 뒷받침하는 국가 주권에 상반되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기 쉽다(Fernandez & Olson 417).

시민권의 개념이 이렇듯 유동적이라는 점은 미등록이민자들이 시위 현장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저자가 이미 보여주듯이,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미국 시민권을 희망하는 사람들보다 미국 영토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훨씬 크다. 이것이 허황된 이상이거나 무리한 요구일까?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이동성이 보장된다면 특정 국가의 시민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3. 2006년 반이민법 저항 시위와 대항 대중 논의

새롭게 이민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미등록이민자들의 인권을 중대하게 훼손한다는 정치권의 비판과 라티노 인구의 반발이 생겨난다. 이런 현상은 1996년 개정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해 2006년에 이르면 전국적 차원의 전례 없는 이민자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2005년 하원을 통과한 센선브렌너(Sensenbrenner) 법안으로 알려진 H.R. 4437.은 미등록이민자의 권리를 축소시키는 정도를 훨씬 벗어나 이민자들을 돕는 조력자들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는 미등록이민자를 시민법이 아닌 형법의 영역에서 다뤄야 한다는 시각, 범법자 혹은 중범죄자로 취급해야 한다는 보수 지배층의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이제 이주의 문제가 정치의 중심 의제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크리스 세페다-밀란(Chris Zepeda-Millán)은 『라티노 대중 동원: 이민, 인종화, 행동주의 *Latino Mass Mobilization: Immigration, Racialization, and Activism*』에서 어떤 동기와 촉발로 인해 이질적 집단들이 연대를 하며 집단행동을 취하게 되

었는지 분석한다. 당시 이 시위가 라티노 미디어를 통해 미국 전역으로 중계되었다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실제 길거리로 나와 외칠 때는 특별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저항과 연대를 모토로 권리와 소속에 대한 의사를 표출하는 정치 행위가 되려면, 개인들의 물질적 이해관계와 그들의 집단적 정체성이 동시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룹 의식’과 ‘연결된 운명’이라는 개념이 개개인의 분노가 광범위한 행동주의로 이어진 기반이 되었는데(15-17), 이런 것이 형태를 달리하면서 지금까지 가시적 정치성과를 생산해 내고 있다고 강조한다(197).

시위 도중 라티노들이 출신국의 국가뿐 아니라 미국 국가를 스페인어로 부르며 양국의 국기를 흔들었던 행동을 두고 대중의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리게 된다. 친이민자 비평가들은 이들 시위자가 평화롭고 쾌활한 분위기에서 국가적 귀속감을 드러냈다고 평가하는 반면, 인종혐오 비평가들은 국가 분열을 꾀하는 반란 의도로 폄훼했다. 2006년 메가 행진을 두고 친이민/반이민의 양 진영이 쏟아낸 평가 혹은 비판은 모두 논의의 전제를 특정한 영역에 한정시켰다. 즉, 이민법 논의를 경제적 이익, 합법화 여부, 공공 정책 적용 범위 등의 범주 내에서 다뤘기 때문에 기존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양분되는 현상을 반복한 것이다.

라티노 정치사회학자인 크리스티나 벨트란(Cristina Beltrán)은 『단일성 문제 *The Trouble with Unity*』에서 이런 틀을 넘어서는 보다 철학적이자 윤리적 차원의 문제제기를 한다. 벨트란은 이런 양상의 시위 분위기를 접하며 소속감에 대한 욕망을 드러낸 차원에서 그들이 저항과 공적 도발이라는 두 가지 형식을 동시에 취했다고 분석한다(2010, 144). 이런 인식은 불법성과 연관된 논의에서 크게 진일보한 언급이다. 벨트란은 이 시위에서 표출된 예상치 못한 기쁨의 감정을 해석하기 위해 한나 아렌트의 정치적 수행의 개념을 차용한다. 아렌트는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행위가 의무감과 사적 이익에서 출발하지만 동시에 공동의 행동에서 비롯된 일종의 행복감과도 연결된다고 설명한다(2010, 142). 벨트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민노동자가 드러낸 정치적 가능성을 분석하는데,

이는 인간다움에 대한 이해와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그가 제시하는 개념을 다뤄봄으로써 당시 시위가 내포한 정치적 과제를 통해 현재 시민권의 논의를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는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벨트란은 다수의 미등록이민자, 즉, 비시민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이 대로 혹은 광장에 나와 공적 영역을 향해 정치적 요구를 발화했다는 점에서 이 시위의 특별함이 있다고 해석한다. 미등록이민자들이 도망자의 신분을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개별적 존재감을 대중적 장소에서 가시화시켰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여기서 ‘공적 영역’은 아렌트의 개념에 기대고 있는데, 아렌트의 ‘공적인 것’의 개념은 두 가지 사항, 즉, 타인에게 보이고 들리는 경험, 그리고 동료와 관계 맺는 공간에 자기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다(양창아 257). 2006년 시위 거리에서 표출된 목소리는 이 전제를 충족시킨다. 벨트란은 미등록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이민노동자를 바라보는 근본적 시각, 즉 그들을 노동의 범주 내에서 객체로 인식하는 담론을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럼으로써 당시 이민자 시위자들을 “존엄과 공적 인정을 요구하기 위해 이미 불확실한 안전을 희생하는 비시민들”(2010, 139)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 또한 『누가 민족국가를 노래하는가』라는 책에서 2006년 시위를 아렌트의 시각으로 사유하면서, 시위자들이 미국이라는 국가 내에서 ‘우리’, ‘민족’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한다고 보았다. 버틀러는 시위대가 스페인어로 미국 국가(Nuestro Himno)를 부르는 장면을 보면서 아렌트 행위 개념의 주체를 떠올린다. 아렌트에 의하면, 이 시위는 ‘나’에서 ‘우리’로 전환하는 과정을 함축할 뿐 아니라 누가 ‘우리’인지를 새롭게 정립하는 정치 행위가 된다. “스페인어를 통해 ‘우리’임을 확인하는 이 ‘우리’(시위자들)는 민족과 평등에 대한 사유 방식을 변화시킨다...민족적 다수집단이 자신의 기준에 맞춰 민족을 정의하려 하면서, 누가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배제 규범을 감찰하는 순간”(버틀러·스피박 60)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해, 기

존의 소속 양식에 맞지 않는 자들이 ‘우리’로서 권리를 요구하는 행위를 통해서 기존 양식의 불평등 구조를 드러내고, 새로운 평등 조건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게 된 것이다(양창아 246).

벨트란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서 요구하는 시민권의 합의나 정치적 의견 표명이 새로운 차원의 것이었고, 시위는 합법과 비합법, 동화와 저항, 시민적 기쁨과 공격적인 분노 사이에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질서정연한 소요였다(2010, 132). 그래서 시민권 여부와 공동체 정체성 사이의 간극이 큰 시위자들은 ‘축제적 분노(festive anger)’(2010, 133)로 정의될 만한 감정을 표출하며, 이전까지 사회 전면에 전혀 드러내지 못했던 대중적 면모, 마치 ‘게릴라적 자유 시민’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다.

벨트란은 시위자를 바라보는 시각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노동자라는 프레임으로 한 사람을 정의하는 관습이 도대체 정당한가 하는 문제이다. 미등록노동자를 노동과의 관계 속에서만 인식한다면 멜리사 라이트(Melissa Wright)가 정의하는 처분 가능한(disposable) 사용품이자 니콜라스 데 제노바가 언급하는 송환 가능한(deportable) 인력일 뿐이다(2010, 149). 그래서 앞 장의 논의처럼 불법성을 강조할수록 그들의 정치적 대표성이 금지되는 것처럼, 미등록이민자를 노동하는 사람으로 한정할수록 그들은 정치적 행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허락받지 못하는 것이다. 마치 아렌트가 엄밀한 의미에서 노동이란 인간의 개별적 고유성을 드러낼 수 없는 행위로 정의했던 것처럼, 우리는 미등록이민자를 각각의 인격이 존재하지 않는 집단적 총체로 인식하는 일에 학습되어 있다. 아렌트는 노동과 필요를 등가로 해석하면서 노동을 교환(대체) 가능한 행동으로 간주한다.⁵⁾ 게다가 미국의 저임금 노동자에 이미 인종적 개념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합법 혹은 불법 여부와 상관

5) “아렌트에게는 노동 행위는 언어를 요구하지 않는다. 오직 인간적 유지를 위한 반복된 업무를 할 능력을 요구한다. 그런 행위는 인간의 고유성을 드러내지 않고, 대신 노동은 대체가능함으로 정의된다”(Beltrán 2009, 613). 노동을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노동자 또한 잉여성이라는 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벨트란은 아렌트의 정의에서 동질화/일반화의 문제점을 발견한다.

없이 라티노 공동체 전체에게 시민보다는 비시민의 이미지가 씌워져 있다.

벨트란은 이 시위자들이 요구하는 시민권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전체주의의 기원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에서 아렌트가 정의내린 무국적자와 이들의 정체성을 비교한다. 아렌트가 말하는 무국적자는 수용국 입장에서는 마치 잉여인간처럼 살아가는 난민들로, 이들의 조건과 상황이 그대로 불법이민자에게 적용될 수는 없다(2010, 138). 무국적자는 주권국가에서 시민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그들을 보호할 법률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불법이민자는 기본권에 한해서 법률의 보호를 받고 있고, 한 개인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실질적인 시민적 권리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보스니아 또한 시민권이 없는 시민이 누리는 권리를 언급하면서, 미등록이민자는 사실상 생존에 필요한 생명권을 보장받기 때문에 시민권과 기본적 인권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117). 이런 맥락에서 이들 이민자 시위자들은 자유롭지 못한 몸으로 ‘마치 자유로운 것처럼’ 정치적 행위를 하는 가운데 ‘우리’의 의미를 새롭게 형성하며(버틀러·스피박 50),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 요구를 통해 권리를 획득하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그 자체로 자유 시민의 삶을 구현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이 해석하는 대로 폴리스의 참여가 인간의 개별성을 획득하는 행위이자 존재의 증거가 된다면, 시위대 속 미등록이민자는 보편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을 지닌 사람이자 법적 지위 여부와 상관없이 시민의 한 형태를 구현하는 새로운 구성원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벨트란은 이 글에서 마이클 워너(Michael Warner)의 대항 대중(counterpublics)의 개념⁶⁾을 차용하여 2006년 시위자들이 보여준 정치적 수행의 가치를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하나의 대응으로 격상시킨다. 시위자들을 새로운 정치 주체의 부상으로, 이 시위를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정치적 행위’의 시작으로 본다면, 이들이야말로 민주 시민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워너는 지배적

6) 마이클 워너의 개념인 ‘하위 주체 대항 대중’은 성소수자 시위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다수다. 워너에 의하면, 그들은 소외의 상태에서 수치와 배제의 감정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단적 드러냄이라는 형식(장면)을 통해서만 개인적 표현 이상의 질적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대중 앞에서 대항 대중이 표출과 감춤 사이의 넘나들을 실천하면서 다양성의 이데올로기를 지닌 차이의 삶을 구현한다고 해석한다(2010, 155). 벨트란은 이 시위대가 개인의 정치적 수행을 통해 바로 민주주의적 가치를 실현하는 대항 대중에 해당한다고 본다. 대항 대중은 “새롭게 공유한 세상, 비판적 언어뿐 아니라 새로운 사생활, 새로운 개인성, 새로운 신체, 새로운 내밀함, 새로운 시민권”(Warner 57-58)을 만드는 능력을 보여준다. 일반(대규모) 대중과 긴장 관계가 선명한 ‘하위 주체 대항 대중(subaltern counter publics)’으로 누군가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집단적 드러냄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워너의 주장에서 벨트란은 미등록이민자들의 집단적 시위 참여가 지니는 의미와 가치를 도출한다. 워너에 의하면 대항 대중은 자신들의 하위 지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지고 대안 담론을 생산하기 위해 ‘소외의 미학’에 의한 ‘이상한 사회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Beltrán 2010, 145). 다시 말해, 대항 대중은 사회의 지배적 문화 환경이나 규범과 부딪히며 개인의 문제를 대중 앞에 드러냄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사이의 구분이 무너지는 어려움과 불이익을 감내하게 된다(Beltrán 2010, 148). 여기서 벨트란은 이민자 대항 대중의 개념을 이끌어 낸다. 2006년 시위에 나선 이민자들 중 많은 수가 합법적 거주자였음에도 미등록이민자들과 연대할 수 있었던 계기는 그들이 과거에 비시민의 지위를 지녔거나, 그들의 주변의 친족, 친구가 그런 신분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시위에 나선 미등록이민자들이 대로에서 그들의 불확실한 신분이 주는 위험을 희생하고 이전까지 없었던 연대를 구축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불이익을 감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들 모두 공적 영역에서 자신을 사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이민자들 내부에서 새로운 연대 방식을 실천한 것이다. 벨트란은 이런 맥락에서 이 시위자들이 정치적 수행의 새로운 시작점을 알리면서 근본적으로는 미주 내 이민에 대한 연대적 책임을 요구하며 미국의 정복과 식민주의를 인정하라는 저항담론을 주창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벨트란은 반규범적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는 시위자의 행위에 민주주의적

가치를 부여하고자 쉘던 월린(Sheldon Wolin)의 개념을 언급하기도 한다. 정치적 수행이라는 관점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속성을 ‘탈주한다(도망친다)’고 정의한 월린의 이론에 기대어 본다면 시위자들의 모습은 현실에 이의를 제기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탈주하는 민주주의’를 어느 순간 민주적으로 만드는 행위자들이다. “월린은 민주주의를 존재 방식으로 바라보고, 정치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정치의 참여를 통해 함께 몰입해 들어가 정치적인 것을 폭발시키는 순간을 민주주의라 말한다”(김만권 36). 월린에 의하면 이 제도 자체가 다수 대중의 개별적이고 끊임없는 요구와 열망을 관철시키는 과정이자 결과이기에, 기본적으로 다수의 권리와 평등을 주창하는 반이민법 저항시위가 그 속성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탈주’라는 용어는 민주주의가 불가피하게 간헐적으로 나타난다는 성격을 강조한 것으로, 민주주의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따라서 대항대중의 지속적 존재와 그들의 위반적(transgressive) 행위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미등록이민자의 시위 행위는 단순히 ‘비시민’의 공적 영역을 향한 요구가 아닌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정치행위자의 실천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

앞선 논의를 통해 시민권 논의는 이민노동자를 고유한 인격을 지닌 한 개인으로 바라보는 데서 출발함과 동시에 도착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게 된다. 2006년 시위에서 미등록이민자들은 국가 권위에 대한 동의와 도전을 동시에 실천하며, 각자의 차이를 표현하면서 동시에 감추기도 하는 줄타기 속에서, 타자와 공동체 사이에서 새로운 연대의 틀을 만드는 전례 없는 행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회 대다수는 여전히 그들을 자신들이 원치 않는 노동을 기꺼이 하려는 사람들로만 바라보고 있다. 그들이 보여준 정치적 수행은 이제 다른 차원의 인식을 요구하는 시점이 되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4. 라티노 정치학의 도전과 새로운 시민권

지난 10여년의 미국 정치사가 보여준 것처럼 2006년의 시위는 예상과는 달리 큰 변화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 시민권 논의뿐 아니라 이민법 개정에서도 정

체 혹은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라티노 하위 주체 정치학(subaltern Latino Politics)’을 주창하는 알폰소 곤살레스가 『정의없는 개혁 *Reform without justice*』에서 분석하고 있듯이, 반이민정서를 지닌 헤게모니 사회 집단의 반격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있었던 라티노 정치조직의 전략적 미비와 라티노 운동의 방향성 문제를 꼽을 수 있다. 2006년 대규모 시위 이후에 라티노 정치 엘리트들은 전국적 차원의 지지도를 이끌어내고자 라티노 사회를 하나의 공통된 집단으로 상징하고 자신을 그들의 대변자로 정의하려는 전략을 펼쳤다. 그것은 백인 사회와의 전선에는 유효했을지라도 내부적 갈등을 무마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Beltrán 2010, 7). 라티노 정치학자들은 단일한 정치적 목소리와 강력한 정당 지지도를 도출할 만큼 하나의 집단적 정서와 공통 이해관계를 지니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물론 이것은 시위 이후의 현상이라기보다는 구상상 한 범주로 아우를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복잡한 라티노 공동체의 속성 때문이다. 출신 국가와 거주지, 연령과 세대, 문화, 심지어 인종이나 종족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의 이익을 대변할 하나의 정치권력으로 부상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라티노의 정치 주체화, 정직 조직화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던 백인 주류 사회가 의회뿐 아니라 언론과 학계에서 반이민정서를 더욱 부추겼고, 라티노 내부의 이질성을 활용하여 표심이 분산되도록 만들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현상은 사회 전반에서 전례 없이 발생한 우경화/보수화다. 곤살레스는 ‘권위적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으로 이 현상을 설명한다. 미국의 국가적 위기를 거론하면서 레이건 정부가 이끌었던 두 가지 흐름,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에서 현재의 억압적인 권위주의적 정치의 뿌리를 찾는다. 그의 분석에 의하면 레이건을 기점으로 이후 모든 정권이 정치경제적 패권을 유지하고자 경제적 측면에서는 세계화 정책과 사회적 측면에서는 이민자 억압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Gonzales 2016, 88). ‘권위적 신자유주의’라는 용어에 대한 동의와 별개로 그가 분석한 현상이 라티노 이민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분명히 보여준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미국 정부의 이런 상반된 정책 기조로 인해 빈곤으로 내몰린 라틴아메리카 이

민자가 불법으로 미국에 유입된 결과, 이들의 규모를 줄이고자 거주 조건을 박탈하고 축출하는 악순환적 일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억압적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파르게 성장하는 인구 규모에 대한 자신감으로 인해, 라티노 정치학자들과 라티노 미디어 매체들은 선거를 통해 정치 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에 찬 분석을 펼쳐보였다. 그래서 곤살레스는 ‘라티노 하위 주체 정치학’이라는 개념을 주창하며 기존의 신실증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략적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강조한다(Gonzales 2019, 550-53). 이것은 정치학계에서 데이터 중심의 양적 연구를 통해 현실 정치를 분석하고 예상했던 흐름이 빛나간 것에 대한 비판이자 새로운 행동주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실천적 제안이다.

곤살레스는 ‘권위주의적 신자유주의’에 저항하기 위해 라티노의 중층적 문제점을 직시해야 할 필요와 풀뿌리 운동 방식의 중요성을 주창한다. 투표를 통한 대표자 선출과 정치권의 활동으로 변화를 견인할 수 없음을 2006년 이후 경험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두 가지 운동이 유의미하다고 평가한다. ‘라티노 청년 운동(Latino Youth Movement)’과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Democracy from below)’는 향후 방향성이자 가능성에 대한 진단인데, 실제로 현재 라티노 청년 모임들이 DACA 폐지 반대 시위 등 가시적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이 되고 있다. 또 다른 예시로 『시민권을 변화시키며 *Transforming citizenship*』라는 책이 보여주듯이, 시민권 개념을 둘러싼 민주주의의 변화가 아래로부터 일어나고 있다. 저자는 라티노들이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유형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시민 사회 안에서 자신의 소속감을 확인하는 방식을 새롭게 터득해 간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적 재구조화를 겪는 도시 속에서 귀속되고자 열망하는 소외된 라티노들이 공식적, 법률적 시민권이 아닌 ‘연합의 시민권(associative citizenship)’을 만들어 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책에서 언급하는 일상 속의 ‘침잠된 네트워크(submerged networks)’는 하위 주체 라티노들이 양극화되어가는 도시적 맥락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 가능성을 증명해 낸 것이다(Gonzales 2019, 562). 신자유주의적 발전에 맞춰 도시 내 슬럼화, 계도화나 젠트리피케이션 등으로 인해 점점 더 공간적 구분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저임금 이민자 집단이 자신들의 비공

식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자구책을 만들으로써 생존과 권리를 찾는 정치 행위를 실천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들의 방식은 법적 시민권이 아니더라도 시민의 삶을 영위하는 다른 형태의 참여이자 요구로 해석될 것이다.

II. 나가며

미국 내 논쟁처럼 우리사회에서도 이민자를 노동하는 사람으로 한정짓는다면 분명 이 국가의 위협으로 바라보거나, 비록 친이민주의자들이라 하더라도 평등과 권력의 문제에 연관시켜 논의하는 데 주저할 것이다. 얼마 전 우리 사회에 큰 논쟁과 갈등을 유발한 난민 문제는 폭넓은 사회적 합의 없이 마무리된 상황이다. 정치 진영의 논리와 세대 간의 인식 차이로 발생한 이분법적 구도로 인해 난민, 불법이민자, 외국인 노동자를 향한 인도주의적 차원, 인식론적 타자화, 인종주의, 노동시장재편, 국가성 논쟁 등 보다 심화된 차원의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지 못했다. 물론 저출산의 해결책으로 이민자 수용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우리사회는 여전히 굳이 어 직면하게 될 현실에 대해 외면하는 경향이 짙다. 라티노 사회를 정형화하는 데 사용되는 불법성의 개념과 이에 대항하는 시민권 투쟁은 우리에게 다른 시각을 지니도록 요구한다. 이런 갈등은 미국에서 거대한 이민자 공동체를 형성하는 국가이면서 조선족과 동남아시아 출신 노동자를 수용하고 있고, 난민 수용 문제에서도 예외적이지 않은 우리 사회가 곧 본격적으로 부딪히게 될 사안에 대해 경제논리 혹은 국가안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 활발한 논의를 펼칠 수 있는 참고 사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민/이주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일부 소개된 역사학의 탈식민적 해체 노력, 혹은 문화를 통한 미시적 극복뿐 아니라 정치, 경제, 철학 등의 다양한 층위에서 라티노 사회적 시민권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불법성이라는 개념이 첨예하게 드러나는 미국 이민 관련 논쟁의 지점들을 다각도로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인식론적 전환을 가능케 하는 공론의 장을 어떻게 확대시킬 수 있는지 그 실천 대안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

참고문헌

- 김만권(2017), 『김만권의 정치에 반하다』, 궁리출판.
 바바라 크룩생크(2014), 『시민을 발명해야 한다』, 심성보 옮김, 갈무리.
 셸던 월린(2913),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석영 옮김, 후마니
 타스.
 양창아(2019), 『한나 아렌트, 쫓겨난 자들의 정치』, 이학사.
 주디스 버틀러·가야트리 스피박(2008), 『누가 민족국가를 노래하는가』, 주해연
 옮김, 산책자.
 Beltrán, Cristina(2010), *The Trouble with Un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Beltrán, Cristina(2009), “Going Public: Hannah Arendt, Immigrant Action,
 and the Space of Appearance,” *Political Theory*, Vol. 37, No. 5, pp. 595-622.
 Bosniak Linda(2006), *The Citizen and the Alien: Dilemmas of Contemporary*
Membership,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Brown, Wendy(2010), *Walled States, Waning Sovereignty*, New York: Zone Books.
 Chavez, Leo R.(2014), ““Illegality” across Generations: Public Discourse
 and the Children of Undocumented Immigrants,” Cecelia Menjívar
 and Daniel Kanstroom(eds.), *Constructing Immigrant “Illegality”: Critiques,*
Experiences, and Respons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84-110.
 Chavez, Leo R.(2013), *The Latino Threat: Constructing Immigrants, Citizens, and*
the Na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Coutin, Susan Bibler(2000), *Legalizing Moves: Salvadoran Immigrants Struggle for*
U.S. Residency,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De Genova, Nicholas(2014), “Immigration “Reform” and the Production of
 Migrant “Illegality,”” Cecelia Menjívar and Daniel Kanstroom(eds.),
Constructing Immigrant “Illegality”: Critiques, Experiences, and Respons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37-62.
 De Genova, Nicholas(2013), “Spectacles of migrant ‘illegality’: the scene of
 exclusion, the obscene of inclusion,”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36,
 No. 7, pp. 1180-1198.
 Fernandez, Luis and Joel Olson(2011), “To live, love and work anywhere you

- please,” *Contemporary Political Theory*, No. 10, pp. 412-419.
- Gonzales, Alfonso(2019), “Nuestro Gramsci: Notes on Antonio Gramsci’s Theoretical Relevance for the Study of Subaltern Latino Politics Research,” *Rethinking Marxism*, Vol. 30, No. 4, pp. 546-567.
- Gonzales, Alfonso(2016), “Neoliberalism, the homeland security state, and the authoritarian turn,” *Latino Studies*, Vol. 14, No. 1, pp. 80-98.
- Gonzales, Alfonso(2014), *Reform Without Justice: Latino Migrant Politics and the Homeland Security Stat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eyman, Josiah McC.(2014), ““Illegality” and the U.S.-Mexico Border: How It is Produced and Resisted,” Cecelia Menjivar and Daniel Kanstroom (eds.), *Constructing Immigrant “Illegality”: Critiques, Experiences, and Respons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11-135.
- Ngai, Mae M.(2014), *Impossible Subjects: Illegal Aliens and The Making of Modern Americ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cco, Raymond A.(2014), *Transforming Citizenship: Democracy, Membership, and Belonging in Latino Communities*, East Lansing: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 Warner, Michael(2005), *Publics and Counterpublics*, New York: Zone Books.
- Zepeda-Millán, Chris(2017), *Latino Mass Mobilization: Immigration, Racialization, and Activism*, Berkeley: Cambridge University Press.

이 은 아

서울대학교
novela63@snu.ac.kr

논문투고일: 2019년 11월 17일
심사완료일: 2019년 12월 9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13일

Latino Immigrant Illegality and Struggles for Citizenship

Euna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Euna(2019), "Latino Immigrant Illegality and Struggles for Citizenship",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30(3), 259-285.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discourses on Latino illegality and struggles for citizenship. In particular, the illegality focusing on Mexican immigrant workers reveals the gradual expanding and intensifying process from Bracero Program in the 1960s, through the militarization of border areas since 1990, to the inauguration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n addition to the anti-immigrant sentiment in the dominant society, which has spread in tandem with the expansion and reproduction of discourses of illegality, the concept of citizenship, triggered by the growing population of immigrants from Latin America, calls for a new perception. To understand the arbitrary and contradictory aspects of illegality and the newly raised concept of citizenship, this study analyses the political, ethical, and philosophical implications of the massive anti protest against the anti-immigration law in 2006. It also reflects on the American immigration issues by presenting a critical view on the new strategies of struggle and citizenship raised by Latino scholars through the social changes that have become conservative and rightward after the mega protests of Latino communities.

Key words Latino, Citizenship, Illegality, Undocumented immigrant, Anti-immigrant sentiment